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가단11297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459,065원 및 그 중 57,058,503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9,71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3.부터, 4,01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5,552,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1.부터, 7,3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4.부터, 1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부터, 4,0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7.부터, 각 2021. 5. 26.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장찬

별지